



제418회국회(정기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기본계획 및 전략기술 유출현황 등의 국회 보고 등>

- 이재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141호)
- 이상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232호)
- 이병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097호)

2024.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 검토의견	6
1. 기본계획·실행계획·전략기술 유출 현황 등에 대한 국회 보고	6
2. 외국정부로부터 전략기술 정보제출 요구 시 수출승인 규정 준용 ..	13
3. 특화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일정비율 이상 비용 의무 지원	17

I . 제 안 경 위

【의안번호 제2201141호】

1. 제 안 자 : 이재관의원 등 27인
2. 제 안 일 : 2024. 6. 28.
3. 회 부 일 : 2024. 7. 1.

【의안번호 제2201232호】

1. 제 안 자 : 이상식의원 등 18인
2. 제 안 일 : 2024. 7. 1.
3. 회 부 일 : 2024. 7. 2.

【의안번호 제2202097호】

1. 제 안 자 : 이병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7. 22.
3. 회 부 일 : 2024. 7.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안번호 제2201141호】

현행법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경제 안보에 중요한 기술을 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전략산업의 육성·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전략기술의 수출 및 해외 인수·합병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전략기술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국·중국 등 세계 주요국들이 현지 생산시설 설립에 대한 보조금을 대폭 지원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에 민감한 영업기밀 등의 핵심 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국내 전략기술 유출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현행법상 기본계획 및 전략기술 유출 현황을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 국회 차원의 확인과 감시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우리나라 전략기술 보호·관리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전략기술 보유자가 외국정부로부터 전략기술과 관련한 정보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화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전년도 전략기술 유출 현황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5조제4항, 제12조제6항 및 제45조의2 신설).

【의안번호 제2201232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경제안보에 중요한 기술 및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으로 규정하고, 관련 투자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관련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미국·중국·대만 등 주요국은 전력, 용수, 도로, 폐수 등 산업 기반 시설을 국가 기본 시설로 보고 정부가 건설하거나, 이용 요금을 감면해주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용수, 전력 등 산업기반시설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어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5년 단위로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에 관련 계획의 보고 의무가 없어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과 지원 등 계획과 법률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또한 전략기술의 유출 및 관리 부실 등이 발생할 경우 국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재로 유출과 관리 부실에 대한 국회 차원의 확인과 감시 등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산업기반시설을 직

접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정비율 이상의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및 해당 연도 실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전년도 전략기술 유출 현황 및 조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전략기술을 보호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및 제45조의2 신설).

주요내용

- 가.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70 퍼센트 이상의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신설).
-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및 해당 연도 실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전년도 전략기술 유출 현황 및 조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45조의2 신설).

【의안번호 제2202097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투자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관련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은 대규모 시설투자가 불가피한 장치산업으로서 전력·용수·폐수 등 산업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나, 현행법상 지원이 재량 규정으로 되어 있어 미국·중국·대만 등 주요국 대비 국가 차원의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기반시설 설치를 촉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및 제3항).

Ⅲ. 검토의견

1. 기본계획·실행계획·전략기술 유출 현황 등에 대한 국회 보고 (이재관의원안, 이상식의원안)

이재관의원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체없이, 전년도 전략기술 유출 현황 및 조치결과에 관한 보고서는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신설 및 안 제45조의2 신설)

이상식의원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전년도 전략기술 유출 현황 및 조치결과를 확정 후 지체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표 1] 조문대비표

현행	이재관의원안	이상식의원안
제5조(전략산업등 육성·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제5조(전략산업등 육성·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지</u>	제5조(전략산업등 육성·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현행과 같음)</u>

현행	이재관의원안	이상식의원안
④ (생략) <신설>	<u>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u>제45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년도 전략기술 유출 현황 및 조치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u>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략기술의 유출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u>③ 제1항에 따른 보고 내용,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④ (현행과 같음) <u>제45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해당 연도 실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전년도 전략기술 유출 현황 및 조치 결과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5조¹⁾ 및 제6조²⁾는 5년 단위의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 기본계획과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계획의 공개 및 보고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은 없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국가안보 등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 보도자료 등을 통해 요약된 형태로 일반에 공개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이재관의원안은 기본계획을, 이상식의원안은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의 경우 5년 단위로 수립되고 정책의 기본방향, 동향, 제도 등

1)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5조(전략산업등 육성·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전략산업등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육성·보호를 위하여 5년 단위로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에 관한 기본방향
2. 전략산업등의 동향 및 발전전망에 관한 사항
3.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를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4.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를 위한 혁신 기반 및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5. 전략산업의 기술력 향상, 특화단지 지정계획, 전문인력 양성·보호 등에 관한 사항
6.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제9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6조(전략산업등 육성·보호 실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제9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전년도 실행계획 이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실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을 다루는 반면, 실행계획은 매년 수립되고 기본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 또는 실행계획의 국회보고 필요성과 정부의 정책집행과 제도운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표 2]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비교

구분	기본계획	실행계획
명칭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전략기술의 육성·보호 기본계획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전략기술의 육성·보호 실행계획
근거	「국가첨단전략산업법」 §5,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령」 §2	「국가첨단전략산업법」 §6,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령」 §3
주기	5년 단위	1년 단위
주요 내용	- 전략산업 등의 육성·보호에 관한 기본방향, 동향·발전전망 - 전략산업 등의 육성·보호를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 혁신 기반 및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 전략산업의 기술력 향상, 특화단지 지정계획, 전문인력 양성·보호 등에 관한 사항 -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전략산업 등의 공급망 안정 대응, 원부자재, 소재·부품·장비 등 핵심 품목의 비축·관리에 관한 사항, 정보자원의 고도화와 민간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기본계획에 따른 연간 실행계획

참고로, 여러 개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계획, 종합계획, 실행계획, 시행계획 등 5년 또는 1년 단위의 행정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입법례는 일반적이지는 않으나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등에서 찾을 수 있음³⁾⁴⁾.

개정안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은 현재 국회 요구가 있을 경우 자료 제출, 상임위에서의 질의응답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회에 제공·설명하고 있다는 입장임.

한편, 전년도 전략기술 유출 현황 및 조치 결과의 보고와 관련하여 이 재관의원안은 매년 보고서 형태로 보고하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요청 및 보고 내용,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상식의원안은 확정된 후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현황을 알리거나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등⁵⁾에서 일부 사례에 관해 공개하는 경우는 있으나, 전반적인 현황 및 결과를 특정한 형식이나 주기에 따라 종합하여 공개하고 있지는 않음.

3)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④ 방위사업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는 방위산업기술 및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③ 방위사업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는 방위산업기술 및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4) 「장애인복지법」, 「보건의료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 「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 「공공외교법」, 「청년기본법」,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등임.

5) https://www.nis.go.kr/AF/1_5_1_2.do (홈>주요업무>산업보안>기술유출현황)

이에 두 건의 개정안은 모두 국회 상임위에 대한 보고의무 신설을 통해 전략기술의 유출·조치 현황 등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국회가 확인과 감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를 위한 정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임.

전략기술의 유출 및 조치는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임을 고려할 때 정보·수사·사법기관에 산재해 있는 정보가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하여 취합·정리되어 국회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해당 현황에 대한 정보의 파악과 논의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현재까지 국가전략기술, 국가핵심기술, 방위산업기술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의 유출 현황 및 조치 결과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국내 입법례는 없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미국의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영업비밀의 유출·절취 관련 보고서를 법무부장관이 매년 2회 상원 및 하원 사법위원회(Judiciary Committee)에 제출하도록⁶⁾ 규정하고 있음.

6) 미국 「영업비밀보호법」 제4조(해외에서 발생한 영업비밀 절도에 관한 보고)(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6, SEC. 4. REPORT ON THEFT OF TRADE SECRETS OCCURRING ABROAD)는 법무부장관(Attorney General)은 매년 2차례 지적재산집행조정관, 지적재산담당 상무부차관, 미국특허청장 및 기타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해외에서 발생한 영업비밀절취에 관한 보고서를 상원 및 하원 사법위원회(Judiciary Committee)에 제출하고, 법무부 웹사이트 등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공개·배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무부 웹사이트에는 1건의 보고서만 확인됨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기술 유출 현황과 조치결과는 정보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검찰의 기소, 법원의 재판을 통해 확정되는 사항으로, 조사·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구체적인 유출현황과 조치결과를 파악·제공하기가 어렵고,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국가첨단전략기술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에 해당⁷⁾하고 이미 동법 개정안과 같은 취지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발의⁸⁾되어 있으므로, 산업기술보호법에서 개정안 반영 여부를 다루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는 입장임.

7)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1조(전략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략기술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것으로 본다.

8)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1. 안철수 의원 발의 개정안(2024.7.18.)

제17조의2(국회보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 관련 해외유출 현황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현황 및 사실관계를 국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의 기소 및 판결현황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권향엽 의원 발의 개정안(2024.8.12.)

제17조의2(국회 자료제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산업기술의 유출 현황 및 시정 방안 등의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외국정부로부터 전략기술 정보제출 요구 시 수출승인 규정 준용 (이재관의원안)

이재관의원안은 전략기술보유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해외사업장에 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관하여는 전략기술의 법 제12조⁹⁾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수출 승인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표 3] 조문대비표

현 행	이재관의원안
제12조(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등) ① ~ ⑤ (생략) <u><신설></u>	제12조(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전략기술보유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해외사업장에 대하여 외</u>

9)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2조(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등) ① 전략기술보유자가 해당 전략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이하 “전략기술의 수출”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2. 31.>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에 대하여 전략기술의 수출에 따른 국가·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산업기술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전략기술이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기술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과학기술 및 「방위사업법」 제34조에 따른 방산물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0.>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략기술보유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전략기술의 수출을 한 경우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결과를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 보고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전략기술의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⑥ 그 밖에 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현행	이재관의원안
⑥ (생략)	<u>국정부로부터 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u>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최근 반도체·이차전지 등 전략기술과 관련한 경쟁이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 차원으로 확대되면서, 반도체 보조금 신청을 위해 반도체 기업의 재고, 수율, 판매정보와 같은 영업비밀을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해외사업장이 속한 국가의 정부 및 기관 등에 의한 전략기술 유출 위험이 대두된 바 있음.

개정안은 전략기술보유자의 해외법인 등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해외사업장이 외국정부로부터 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전략기술의 보호를 위해 수출 승인 규정을 준용하여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국가·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 측면에서 중요성이 큰 전략기술을 보호하고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에 근거한 「산업기술보호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17조¹⁰⁾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4조제2항¹¹⁾ 및 제12조¹²⁾에 따라 전략기술을 해외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정부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수출 승인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음.

10) 「산업기술보호지침」

제17조(수출 승인 신청 대상)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장은 외국기업 등에 매각, 이전 등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외국기업 등에 국가핵심기술 매각
2. 외국기업 등에 자료전송, 양도, 기술지도, 위탁연구, 위탁생산, 인력의장기파견 등을 통한 국가핵심기술의 이전
3. 외국기관 등에 실질적으로 국가핵심기술의 이전·공유를 위해 진행되는 세미나, 강의, 학술발표 등 특정기관과 기술 협력이나 정보 교류
4. 국가핵심기술이 실질적으로 이전·공유되는 외국기업 등과의 연구 및 공동연구 참여(외국기업 등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여 수행하는 국가핵심기술 관련 국제공동연구를 포함)
5.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특허권의 양도 또는 실시권을 허락하면서 관련 영업비밀 등 비공개 기술의 동반 이전
6.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특허권의 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등 양수인 또는 실시권자에게 해당 기술에 대한 실질적인 배타적 지배권의 이전
7. 외국 정부 및 기관 등에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설계·제조상의 결함 및 타당성 분석, 신뢰성 검증 등을 위한 연구용역 자료 제공
8. 외국 정부 및 기관 등에 국가핵심기술 관련 해외 인증, 인·허가를 위한 기술자료 제공
9. 외국법원, 국제무역위원회(ITC) 등 제소, 소송 대응을 위한 국가핵심기술 자료 제공
10. 클라우드서비스 또는 이와 유사한 서비스에 저장된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외국기업 등의 접근권한 부여·열람·사용 등의 허용
11. 기존 수출 승인을 통해 국가핵심기술을 이전받은 해외 법인이 신축 사업장(공장)으로의 기술 재이전
12. 위 1호에서 11호 외의 다른방법으로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고자 하는 행위

11)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전략기술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2조(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등) ① 전략기술보유자가 해당 전략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이하 “전략기술의 수출”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략)

⑥ 그 밖에 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수출금지·수출금지·원상회복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 외국정부의 요구에 따른 전략기술 유출 가능성에 대한 보호 근거를 행정규칙(산업통상자원부고시) 및 산업기술보호법 준용을 통해 두기보다 법률에서 직접 명시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및 명확성 측면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입법정책적으로 개정안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자가 해외사업장의 전략기술 관련 정보를 외국정부에 제출하는 것은 수출 승인 대상에 해당되어 이미 수출심사를 받고 있으므로 법 개정의 실익이 없으나, ‘외국정부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수출승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명시하기 위한 취지라면 개정안 제6항을 신설하는 대신 제1항을 개정하여 전략기술 수출의 범위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 특화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일정비율 이상 비용 의무 지원 (이상식의원안, 이병진의원안)

이상식의원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 제20조제1항제1호¹³⁾에서 규정한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려는 내용임(안 제20조제3항 신설).

이병진의원안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안 제20조제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비용의 50퍼센트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신설).

13)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0조(특화단지 조성·운영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 조성·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22. 12. 31.>

1.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반시설(천재지변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화 시설을 포함한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2. 그 밖에 특화단지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등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④ 특화단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 ⑤ 정부는 제1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정되는 특화단지에 대하여 제1항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특화단지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 4] 조문대비표

현행	이상식의원안	이병진의원안
제20조(특화단지 조성 · 운영 지원) ① (생략)	제20조(특화단지 조성 · 운영 지원) ① (현행과 같음)	제20조(특화단지 조성 · 운영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 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② ----- ----- ----- -----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비용의 50퍼센트 이상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 ⑥ (생략)	④ ~ ⑦ (현행 제3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④ ~ ⑦ (현행 제3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제25조의2(전략산업등 선도사업 지원) ① ~ ④ (생략)	제25조의2(전략산업등 선도사업 지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전략산업등 선도사업 지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현행	이상식의원안	이병진의원안
⑤ 제2항제3호의 지원이 산업기반시설의 구축과 관련한 경우에는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화단지 조성·운영”,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 또는 “특화단지 운영”은 “선도사업 추진”으로, “특화단지”는 “선도사업”으로 본다.	⑤ ----- ----- ----- ----- -제4항----- --. ----- ----- ----- ----- ----- ----- -----.	⑤ (현행과 같음)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0조¹⁴⁾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

14)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0조(특화단지 조성·운영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 조성·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22. 12. 31.>

1.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반시설(천재지변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화 시설을 포함한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2. 그 밖에 특화단지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등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④ 특화단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 ⑤ 정부는 제1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정되는 특화단지에 대하여 제1항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특화단지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치단체가 특화단지 조성·운영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등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은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화단지 조성·운영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등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규정으로서, 전략산업등¹⁵⁾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력·용수 등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도 해석·활용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23년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정 이후 사업자가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조성·운영하는 경우에 대하여 국가가 사업자에게 지원하기 위해 확정된 예산은 '23년 1,000억원, '24년 439억원 등 총 1,439억원이며, 동 비용 지원의 구체적인 기준이 되는 하위법령은 '24년 제정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24. 8. 30. 제정)임¹⁶⁾.

15)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의미함.

16)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은 전력·용수·폐수·도로·처리수 지하관로 등 5개 분야를 지원대상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예산 교부 당해연도 공사 착공 가능 시설에 단년도 지원하고, 기반시설의 직접 사업비로 사용하도록 하며, 특화단지 투자규모 및 지역을 고려하여 총 사업비의 최대 30%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는 내용임

< 특화단지 기반시설 국비 지원 비율 >

구 분	기업 투자 규모별			비수도권	수도권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上 구간	100조원 이상	30조원 이상	10조원 이상	30%	25%
中 구간	10~100조원	3~30조원	1~10조원	25%	20%
下 구간	10조원 미만	3조원 미만	1조원 미만	20%	15%

[표 5] 특화단지 기반시설 국비 지원현황

지원 연도	구 분	예산 지원액	지원 항목
'23년	용인·평택	1,000억원	■ 용인·평택 일반산단 변전소·송전선로 (500억원) ■ 용인·평택 일반산단 용수관로 (500억원)
'24년	구 미	200억원	■ 구미대교 신축 (200억원)
	포 항	154억원	■ 영일만산단 정수장 증설 및 용수관로 (154억원)
	울 산	38억원	■ 하이테크밸리 변전소·송전선로 (38억원)
	새만금	47억원	■ 용수·폐수 관로 (47억원)
합 계		1,439억원	

그런데, 이러한 특화단지 지원과 관련하여 업계와 언론 등에서는 전략 산업등의 사업자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시설투자가 필수적이므로 현 지원 수준 또는 정부의 행정예고(안)를 통해 공개한 수준보다 더욱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와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예를 들어, 용인·평택 특화단지에서 민간 사업자가 직접 설치하는 전력(변전소·송전선로) 및 용수(용수관로) 산업기반시설의 총사업비가 각각 1조 1,673억원과 1조 809억원 수준이며 반도체 생산을 위한 팹(Fab) 등 생산시설에 대한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계획¹⁷⁾하고 있으나, 대한상의, 반도체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원한 비용은 1회성으로 총

17) 삼성전자는 '43년까지 용인시 남사읍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약 360조원, 평택 캠퍼스에 '30년까지 약 120조원, 기흥 캠퍼스에 20조원을, SK하이닉스는 '46년까지 용인시 원삼면 반도체 클러스터에 약 120조원, '25년까지 청주 산업단지 반도체 신규 팹에 20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임.

1,000억원(각각 500억원)에 불과하여 국내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이에 이상식의원안은 사업자가 “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이병진의원안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비용의 50퍼센트 이상”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문의 기술 방식에는 일부 차이가 존재하나, 공통적으로 법 제20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기반시설 설치비용의 50% 또는 7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재무적 부담을 덜고 원활한 투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나아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하려는 취지임.

이와 관련하여 동 사안은 법률을 통해 의무적으로 국가 재정을 투입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재량지출이 아닌 의무지출로 전환됨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한 고려와 함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법률 개정 여부 및 구체적인 보완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비용지원 대상 시설의 종류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두 개정안은 모두 “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기반시설¹⁸⁾”의 설치 또는 운영 비용을 의무지원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동법 시행령 제31조는 가스공급시설, 도로, 용수공급시설, 전기공급시설, 집단에너지공급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통신시설, 특화단지의 공동구(共同溝), 공동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 및 설비 등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의무적 비용 지원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비용지원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비용지원의 대상을 “전기공급시설, 용수공급시설” 등으로 구체적으로 한정하거나, 대통령령 등 하위규정에 의무적인 비용지원 대상을 별도로 정

18)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0조(특화단지 조성·운영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 조성·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22. 12. 31.>

1.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반시설(천재지변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화 시설을 포함한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2. 그 밖에 특화단지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후략)

동법 시행령

제31조(특화단지 조성·운영 지원) ①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반시설(천재지변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화 시설을 포함한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인프라를 말한다.

1. 가스공급시설
2. 도로
3. 용수공급시설
4. 전기공급시설
5. 집단에너지공급시설
6. 폐기물처리시설
7. 폐수처리시설
8. 통신시설
9. 특화단지의 공동구(共同溝)
10. 공동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 및 설비
11. 그 밖에 특화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공공시설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

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둘째, 비용지원 적용 대상을 시점 기준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바, 이 법 시행 이후 신규로 설치하는 산업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지 또는 이 법 시행 이후('22. 8월) 설치한 모든 시설 또는 현재까지 비용을 지원하지 않은 시설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등 적용 대상을 적용례를 통해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현재까지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직접 산업기반시설을 설치하였거나 설치를 확정된 규모는 정부가 재정지원 대상으로 파악한 전력 및 용수 시설만을 기준으로 할 때 총 2조 3,238억원 수준으로, 지원대상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소요예산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

[표 5] 특화단지 사업자가 직접 설치하는 산업기반시설 사업비

지원연도	특화단지	기반시설	총사업비	국비	민간
23년	용인·평택	전력	1조 1,673억원	500억원	1조 1,173억원
		용수	1조 809억원	500억원	1조 309억원
24년	울산	전력	176억원	37.5억원	176억원
25년	청주	전력	146억원	36.6억원	109억원
	새만금	전력	434억원	108.5억원	326억원

주1: '25년 국비 지원 규모는 정부 예산안 기준

주2: 전략산업등 영위 기업이 직접 공시, 보도자료 등을 통해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설치·운용 금액을 발표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에 따른 지원대상에 한정하여 집계된 금액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예를 들어 '25년부터 설치하는 산업기반시설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580억원(청주 146억원, 새만금 434억원)의 50%인 290억원 또는 70%인 406억원 등이 필요한데 반해, '22년 동법 시행 이후 기 지원한 용인·평택 전력·용수 기반시설 등 조성된 산업기반시설 전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1조 1,619억원(50%)에서 1조 6,267억원(70%) 등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¹⁹⁾.

셋째, 개정안은 비용을 의무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용지원의 절차 등을 대통령령 등 하위규정을 통해 구체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담 기준도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비용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산업기반시설은 시설의 종류, 지리적 위치와 여건 등에 따라 설치·운영에 수반되는 비용과 재정 지원이 필요한 범위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지원비율(50%, 70%) 등 구체적 사항은 법에서 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지원금의 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고시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임.

19) 현재까지 사업자가 직접 산업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확정된 사업 기준이며, 이후 추가적인 설치 계획이 확정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하게 됨.

환경부는 「수도법」 등에서 산업단지 등에 필요한 용수 공급을 위한 시설은 국가(수도사업자) 등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략산업 등 다량의 용수 확보 및 용수 공급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나, 의무규정보다는 재량규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기획재정부는 국비보조율은 기업활동 촉진, 기업 책임성, 재정여건, 공공기관의 역할, 사업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보조금 관리법도 기준보조율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률에 의무 지원비율을 규정하는 것은 곤란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며,

용인시는 반도체 산업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전력, 용수, 폐수 등의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직접 설치하고 그 비용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여건상 현실적으로 어렵고 지자체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므로, 지자체에 대해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의무를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60